유지보수 계약서 (On-Call)

2013. 01. 01

갑 :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을 : (주) 원익아이피에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원익아이피에스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의 천안,아산 사업장에 있는 설비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설비"의 "유지보수"를 의뢰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서 "갑", "을" 상호 간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품을 당사가 직접 조달하여, 유지보수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을"은 "유지보수"를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유지보수"라 함은 기 구축된 "장비"뿐만 아니라 새롭게 구축될 "장비"의 유지와 보수를 포함한다. ②"유지"라 함은 기 구축된 "장비"와 새롭게 구축될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보수"라 함은 "장비"의 일부 내용을 시간 및 환경에 맞게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제3조[유지보수의 범위]

"을"은 "갑"의 "장비"가 최적의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및 범위는 별첨1의 "유지보수업무 수행계획"에 의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작업일 기준)까지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은 "甲"과 "乙"의 합의로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상호협조 및 자료제공]

- ①"갑"과 "을"은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관계자료 및 기기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 ②"갑"과 "을"은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며, "을"은 필요 시 "갑"에게 관련 인원을 회의에 출석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

- ①"갑"은 "을"의 본 계약상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별첨2 "대금지급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산정한 계약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단, "을"이 본 계약 제12조에 의한 검수에 불합격 될 경우 "갑"은 검수에 합격 할 때까지 당월 "을"에게 지급할 계약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있다.
- ② 부품비는 본 계약에 첨부된 부품단가계약에 준하며, "갑"의 요청에 의해 공급된 부품은 수량에 따라 실비 정산하여 지급한다.
- ③"을"은 당월 유지 보수 업무 실적을 집계한 후 본 조에 따른 대금(인건비, 부품비)을 산정하여 제7조 및 제12조의 관련자료와 함께 "갑"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갑"은 이를 확인한 후 "갑"의 대금지급 규정에 따라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④ Q-Code 등록 부품의 경우, 구매 실변동 단가를 적용 한다.

제7조[계약금액 지급조건]



- ①계약대금 지급조건과 일정은 별첨2의 "대급지급 조건 및 일정"과 같다.
- ②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식비, 교통비, 국내 출장비 등 "을"의 유지보수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 ③해외출장이 수반되는 유지보수 작업인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추가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유지보수 책임자]

- ①"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 접촉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경험 있는 유지보수 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를 각 임명하고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갑"과 "을"이 유지보수의 수행을 위해 행하는 통지 및 연락, 확인 등은 원칙적으로 유지보수 책임자를 통하여서만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팀의 구성 및 작업장소]

본 계약기간 중 "갑"이 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갑"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갑"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대기한다.

제10조[유지보수의 착수등]

"갑"은 유지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한 내에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원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보수 수행의감독]

"갑"은 계약의 수행과정이나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진척사항의 보고 및 검수]

- ①"을"은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비교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갑"은 전 항과 같이 "을"이 제출한 유지보수 진척사항의 보고서를 기초로 유지보수가 완료된 결과물을 검수한 후 즉시 "을"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검수에 불합격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교육]

- ①"을"은 "갑"이 요청할 경우 "작업조치"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교육일정, 교육대상인원, 교육범위 등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지적재산권]

본 계약 체결 전부터 "을"이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은 "을"이 소유하며,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을"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15조[제3자의 권리와 "갑"의 보호]

①"갑"이 유지보수가 완료된 결과물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을"은 청구 또는 소송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단 "갑"은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 당한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이 유지보수가 완료된 결과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대체 혹은 수정하여야 한다. 대체 또는 수정된 결과물은 유지보수 이전의 것보다 기능 및 성능이 동등 또는 우수하여야 한다.

제16조[불가항력]

-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수송기관의 사고, 노사분규, 법령의 제정 및 개폐, 국가기관의 결정 등 기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상의 제반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등]

- ①"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②"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유지보수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 계약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 ①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변경에 대한 숭낙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갑"과 "을"이 계약내용의 변경에 합의한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변경계약과 배치되는 본 계약의 내용은 효력을 <mark>상실한</mark>다.
- ③본 계약 체결 후 "을"이 다른 제3자와 합병하거나 합병당하는 경우 또는 "움"이 그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은 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해지]

- ①"갑" 또는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 1.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 2.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 3.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 4.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하여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4일의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③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하자보증]

"을"은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자가(원인) 유지보수가 완료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발생 할 경우에는 그 하자를 자신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보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급 지급한 부품을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은 동일제품으로 배상한다.



제21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내용 또는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따른 결정을 우선으로 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련법령 및 조리에 의하기로 한다.

제22조[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첨1 : 유지보수업무 수행 계획

별첨2 : 대금지급조건 및 일정

별첨3 : 비밀유지 서약서

위와 같이 계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각 기명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3년 01월 01일



업 체 명 :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삼성2로 95

대 표:권 오 현 (인)

업 체 명: (주)원익아이피에스

주 소 : 경기도 평택 청호리 332-1

대 표:이 문 용



[별첨1]

■ 유지보수 업무수행 계획

- 1. Service Engineer
 - 1)"갑"의 요청에 의한 Service 실시는 "을"의 Engineer로 한다.
- 2)"갑"의 요청에 의해 계약된 Engineer는 "을"과 협의 후 인력을 결정한다.
- 2. 유지보수 보수방법
 - 1) 유지보수의 정의

본 계약에서 유지 보수라 함은 "을"이 "갑"에게 공급한 설비에 대하여,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정기/비정기 점검 및 고장 발생시의 보수 활동을 말한다.

2) 유지보수의 방식

On-Call Service 방식으로 하며, 작업은 "갑"의 기준으로 하되, 구정/추석 등 명절도 포함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 단, 작업 시간 등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3. 고장 조치(수리) 실시 방법
 - 1) "갑"은 보수 필요시 "을"에게 Service Call을 요청한다.
 - 2) "을"은 "갑"의 Call이 있을 시에는 2시간 이내에 입실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 3) Line내에서 보수 활동 중에는 "갑"의 Engineer와 함께 행동하여야 한다.
 - 4) "을"의 Engineer는 보수 완료 후 "보수 Sheet"를 제출, "갑"의 담당 Engineer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보수 완료의 기준은 정상 가동 상태로 한다.
- 4. "을"의 업무 내역
 - 1) A/S 업무내역
 - Maintenance 및 Error Recovery
 - 계획 일정에 따라 작업 실시 후 기록 보고
 - 고장 분석 보고서 작성
 - Report 보고
 - Spare Part's 사용 List 작성
- 5. 안전사항

"을"의 유지보수 인력은 "갑"의 사업장에서 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갑"이 정한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별첨2]

■ 대금지급 조건 및 일정

- 1. 대금지급 조건
 - 갑은 을의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아래와 같이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 1) On-call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분 류	Service 시간 (Hr)	유지 보수료	비코
On-call 계약	기준시간(평일) [09:00 ~ 18:00]	₩ 5만원/Hr	- Line 입실 시간부터 ~ 퇴실 시간 적용 - 시간외 근무 (₩75,000원/Hr) - 중식,석식 시간 제외 - 석식 시간 작업時 : O/T 적용

- 설비 Trouble시 대응시간은 2시간 이내에 대응하도록 한다.
 - Set-Up 불안정 설비에 대한 Trouble 발생件은 미지급 한다.
- 반입 예정 설비 Warranty 종료시점과 동일 적용한다.
- 부품비가 포함되는 경우 미계약 품목은 구매팀과 협의 후 진행.
- 작업시간 외 현업에서 인정하는 시간은 정산비용에 포함 한다.

VED

2. 대금 지급 일정

- 1) "을"은 On-Call 유지보수 한 내용 및 시간을 Report 제출하여 사용부서의 확인을 得 한 후 "갑"에게 작업비를 청구하고 "갑"은 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일로 30일 이내 "을"에게 지급한다.
- 2) 작업비 지급일과 지급방법 등은 "갑"과 "을" 상호 합의로 변경 할 수 있다.
- 3) Report 작성 내용 및 견적서 작성
 - ① 원인→분석→조치→Test 결과, 작업 인원, 소요시간等 세부 작성 後 현업 Sign 必得.
 - ② 件별 Report 내용과 일치하는 대금 정산서 또는 견적서 제출.



비밀 유지 서약서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원익아이피에스 (이하"을"이라 한다)은 업무 및 설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권리를 갖고 있는 제 3조에 업무 및 설비 관련 기술을 "갑"에게 설명 및 제시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갑]: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구매팀 최 문 석 대리

[을]: (주)원익아이피에스 DP사업팀 최 용 각 부장

제3조(적용 정보)

- ① 본 계약에 따라서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사양,자료 및 기타 업무상 필요한 정보
- ② 본 계약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는 업무 및 설비 관한 관한 정보 등이다.
- ③ 전 2항에 규정한 각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합하여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해당 비밀정보를 다음의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OEN

[갑]: 위 "비밀정보"를 이용한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검토 및 사업화

[을]: "갑"과의 사업추진에 대한 내부 검토

제5조 (비밀유지 기간)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비밀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정보 제공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적용된다.

제7조 (주의의무 정도)

- 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갖고 해당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해서와 같은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유출에 대하여 면책된다.

제8조 (비밀정보의 표시)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비밀보호의무는 제3조에 규정한 개별적으로 기술된 구체적인 자료에 포함된 비밀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비밀정보에 한하여 적용된다.

- 1. 비밀정보 제공당시"대외비"등의 표시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
- 2. 구두, 음향, 시각적 표현 등으로 인하여 제공 당시에는 비밀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비밀로서 취급되어지고 제공 후 15일 이내에 비밀정보임을 표시하는 문서를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에게 통지한 것

제9조 (비밀정보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과실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사전에 유출을 허락한 정보

제10조 (보증)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적법하게 비밀을 제공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제11조 (지적소유권)

본 계약 체결전에 각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적재산권은 원래의 당사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지적재산권을 허여 또는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자료의 반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의 반환을 요청환 경우에는 그 사본과 더불어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제공자가 부담하다.

제13조 (손해배상)

"을" 또는 "을" 의 담당자 및 종업원이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상호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배상액(변호사 비용포함)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의무의 부과)

본 계약은 당사자들에게 특정 기술 내지 용역, 제조물에 관한 판매, 구입, 실시권 허여, 양도 및 처분 등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한다.

제16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조항의 첨가는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다.

제17조 (관합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사에서 요청한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3년 1월 1일

업 체 명 :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5

대 표:권 오 현 (1)

업 체 명 : (주)원익아이피자

주 소 : 경기도 평택 청호리 332-1

대 표:이 문 용이

